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MBC 신강균...’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발언의 앞뒤를 생략하고 왜곡 편집해 방송하는 바람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집회 사회자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방송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신명중)는 9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학력 관련 발언을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이 왜곡 편집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인 송만기 씨가 MBC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C 측은 송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이 특정 사실의 보도 및 이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방송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인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보도하는 경우 그 발언자의 진의 또는 그 발언자의 발언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한 그 발언자가 한 발언 중 앞뒤의 말을 생략하여 일반인들이 발언자의 발언 의미를 정반대의

취지로 이해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위험성이 있도록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4년 4월 노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한 발언을 왜곡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MBC 측을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송 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조선일보 2006년 2월 10일

이익치 전(前) 현대증권 회장 ‘횡령 보도’ 기자 2명 고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29일 1백억 원 대 돈을 미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월간조선 송 모 기자와 오마이뉴스 김 모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前) 회장은 소장에서 “로스

앤젤레스 한미은행 웨스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으며 아들은 한국명 외에 미국 이름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이번 12월호에서 미국 교

민사회 주간지 ‘선데이 저널’을 인용, “이 씨가 본인 및 아들의 미국 이름으로 1백억 원 대의 자금을 LA의 한국계 은행에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005년 11월 30일

“간첩출신이 군 조사하다니...” 본지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 의문사위 직원 패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전직 조사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문사위 소속이던 김 모(40) 조사관은 1993년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 형을 복역한 후 1999년 사면 복권돼 2003년 7월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김 씨가 조사관으로 활동하던 2004년 7월 조선일보는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 등 수십 명 조사”라는 기사를 썼고 조선일보 김대

중(金大中) 이사(理事) 기자(현 고문)는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소재 목의 칼럼을 썼다. 또 한나라당 박 대표는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와 발언에 대해 김 씨는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씨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지금 자신에 대해 간첩이라고 한 점, 예비역 장성을 조사했는데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했다고 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

염원섭 판사는 25일 김 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가 문제 삼는 표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선일보 기사와 칼럼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2006년 1월 26일

‘주병진 씨 사건’ 언론에 알린 경찰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 판사는 개그맨 주병진 씨의 성추문 사건을 확정된 사실처럼 언론에 알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경찰관 이 아무개(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과 참고

인의 진술내용, 주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주 씨의 피의사실이 틀릴 수 있다는 인식이 이 씨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 씨의 피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주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사건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 등으로 미뤄 이 씨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5년 12월 26일

박정희 명예훼손 출판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는 19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에서 독립군 탄압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책을 출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도서출판 I사 대표 유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박정희는 1939년 8월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이후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신경육군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실린 ‘일송정 푸른 숲에 선구자는 없었다’는 책 3,000부를 출판한 혐의다.

검찰은 “고소인 측이 박 전 대통령이 서명한 1939년 3월자 문경소학교 성적통지표와 이를 받은 학생의 확인서를 첨부했고 1939년 박 전 대통령과 학교 가을운동회에 함께 참여했다는 내용이 실린 동창회지를 제출했다”며 “이는 1939년 8월 만주에서 독립군 탄압활동을 했다는 책의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

라고 밝혔다.

검찰은 책 서문을 작성한 김삼웅 관장에 대해서는 “책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채 ‘역사바로세우기’ 명분에 동조해 서문을 써준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 씨는 올 2월 이 책이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사 대표 유 씨와 추천사를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일보 2005년 12월 19일

한겨레 ‘언론권력’ 보도 승소

〈한겨레〉의 2001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29일 일부 만평과 사설에 대해 3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도 깨고 동아일보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사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소송 도중 취하한 바 있어, 이 시리즈를 둘러싼 소송의 사실심은 모두 종결됐다.

재판부는 1975년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태 당시 동아일보 경영진이 정권

의 광고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고, 경영개선이란 명분 아래 기자들을 집단해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련의 해고과정과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삼만 당시 사장은 유신정권의 광고탄압에 적극적으로 싸울 의지가 부족했고, 나아가 기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단순한 사내분규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주요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사와 사주들의 친일행적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김성수의 친일 논설은 김성수 자신의 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동아일보사의 당시 사주 및 경영진 등이 친일 논설을 자주 실는 등 친일 행각을 일삼은 사실이 있다는 보도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진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1호선 시정~종각역 구간이 동아일보사옥 때문에 급곡선으로 건설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아일보사의 반대가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아일보 사옥 때문에 세종로 시민광장 조성 계획이 무산됐다’는 보도도 “주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겨레〉는 2001년 3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심층해부 언론권력’이란 제목 아래 동아일보사와 사주 등 족벌언론들의 언론권력적 행태를 파헤치는 시리즈 기사를 실었으며, 동아일보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었다.

한겨레 2005년 11월 30일

익명원칙 지킨 고발 보도는 명예훼손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인력알선업체 T사 패소 판결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익명 보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공익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인력알선업체 T사가 '일방적 주장에만 기초해 취재한 내용을 방송해 명예가 훼손당하고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가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의 불법 알선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차례로 소개한 내용은 시청자에게 일부 문제 업체가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일 뿐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이 아니라"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방송사측이 몰래 촬영한 부분의 경우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됐고, 음성도 변조돼 일반 시청자들이 해당 업체가 바로 원고 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CBS 노컷뉴스 2006년 1월 30일

오마이뉴스, 주성영 의원 상대 5억 손해소

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는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치적 음모설을 주장한 한 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3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오마이뉴스가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태어나 그런 욕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9월 23일 보도한 주 의원 관련 기사에 대해, 주 의원 측이 '정치적 음모', '정치 공

작' 등으로 표현하며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치적 음모설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보도자료에서 "주성영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인 9월 22일 피감기관인 대구·지검 간부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하면서 술집 여사장 등에 욕설·폭언을 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주 의원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사이비 황색언론', '쓰레기' 등으로 폄하하고 '정치

적 음모', '정치 공작' 등으로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주 의원은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10월 31일 오마이뉴스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국민일보 2005년 11월 4일

“언론 변론은 전문성과 고도의 균형감각 필요”

지난 87년 이후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흐름에 맞춰 언론사들이 대부분 법률자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상혁 변호사도 MBC 프로그램(암니 옴니), PD 연합회와 각종 언론단체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언론 중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언론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맡고 있다.

그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서울남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낸 소위 'X파일'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실명공개 한 MBC

이상호 기자의 법률자문도 해주고 있다. 또 한 변호사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개업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변호사가 맡은 언론 중재와 소송사건이 100건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많은 언론 중재, 소송 사건을 맡으면서 한 변호사는 "언론이 개입된 사안은 '옳고 그름'의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언론 업무의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또 그는 "언론 관련 소송은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덧붙였다.

요즘 그는 소송보다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강의, 세미나로 더 바쁘게 보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언론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연수 프로그램 중 언론 관계법 강의를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그는 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언론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언론의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을 인식하고 언론사들이 언론 관계 법률지식과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일신문 2005년 11월 21일

손학규 지사, ‘인허가 수뢰’ 보도 언론에 10억 손해소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4일 한겨레신문 발행인과 취재기자 등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 지사는 고소장에서 “취재에 있어 최소한

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존재하지도 않는 검찰관계자의 입을 빌려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어낸 이유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4일자 조간에서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브로커한테서 받은 10억 원 대 돈의 상당 부분이 손 지사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 2005년 11월 5일

‘미디어법’ 펴낸 김옥조 한림대 객원교수 “중재위 등 언론 유관기관 정부간섭 막을 장치 필요”

한림대 김옥조 객원교수가 최근 언론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망라한 ‘미디어법’(커뮤니케이션북스)을 펴냈다. 2004년 철우언론법상 대상을 받은 ‘미디어 윤리’와 짝을 이루는 저작이다. 3000여 개의 주(註)와 국내의 판례가 1002쪽의 두툼한 분량에 담겼다. ‘미디어법’은 표현의 자유, 보도 취재의 자유, 알 권리, 선거보도,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초상권, 저작권 등 언론의 주요 개념에 대응하는 법을 소개하고 해설했다. 7월 28일 발효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2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한 뒤 국무총리비서실장, 한국언론연구원장을 지냈다.

집필 과정에서 그는 “국회가 무원칙하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법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놀랐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신문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경우 법의 형평을 이루려면 신문보다 뉴스 시장 독점이 더 심한 방송에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

또 그는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등 언론 유관기관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까지 다루는 준사법기관이지만 모든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전체 위원이 9명인 신문발전위나 방송위도 문화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할 수 있어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김 교수는 언론의 반성도 촉구했다. “언론이 ‘알 권리’를 얘기하지만 ‘정보 공개법’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언론인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2005년 11월 2일

‘조선일보·신군부 건물 맞교환’ 보도는 오보 “한겨레는 정정보도하라” 서울고법 조정결정

’80년 연회동 2억 주택 - 정동 5억 안가, 조선일보 - 신군부 건물 맞교환’이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 및 만평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29일 “한겨레신문사는 2006년 1월 6일까지 2면 우측하단에 정정보도문을 2단 박스기사로 게재하라”며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월 7일부터 매일 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와 한겨레신문사 양측은 이 조정결정에 합의했다.

한겨레신문은 2001년 9월 11일자 신문 1면에 당시 장영달 의원의 국회질의

등을 근거로 조상기·허종식·권혁철 기사가 작성한 기사와 함께 3면에 ‘특혜 교환 이면 거래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 장봉군 작가가 그린 만평을 실었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거짓 내용의 기사와 만평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올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 만평작가는 조선일보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선일보사에 승소 판결했으나 정정보도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겨레신

문의 기사와 만평 등은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어느 모로 보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조선일보사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겨레신문은 연회동 가옥과 정동 안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한 후, 이러한 특혜거래가 마치 조선일보사와 신군부 사이의 ‘권언유착’의 신호이거나 부정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증거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려 조선일보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5년 12월 30일